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가단1362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영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효중

변론 종결2024. 11. 7.

판결 선고2024. 11. 2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2023. 9.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4. 2. 27. 접수 제331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차전177002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이 있는데, D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상속인인 D와 피고가 2024. 2. 27. D를 제외한 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2023. 9. 15.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23. 10. 24. 서울가정법원에 2023느단4096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3. 10. 30.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D는 위 상속포기 수리심판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당사자도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고가 스스로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취지에서 소를 취하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소취하에 부동의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지연 등을 초래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정한다(피고는 소송비용 지출 등을 이유로 소취하에 부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정의 신청으로 충분히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일 뿐이다1))].]

판사신성욱

별지

1) 소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바,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5. 23.자 2007마27 결정, 대법원 2014. 2. 21.자 2013아79 결정 참조).

원고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원고는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되므로 그 소송비용은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만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84. 5. 28.자 84마239 결정 참조).